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9. 1. 21

제안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경위

2009. 1. 21 제14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김용갑의원 외 6인의 동의로 발의되어 상정·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2005.8.4 법률 제7664호)됨에 따라 조례에 기금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제2항)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

5. 개정조례(안) : 별첨

6.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7.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산안 및 결산”을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2007.10.5일부개정)	개정안
<p>제7조(특별위원회) ①(생략)</p> <p>②의회는 <u>예산안과 결산</u>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③,④(생략)</p>	<p>제7조(특별위원회) ①(현행과 같음)</p> <p>②----- <u>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u> -----</p> <p>-----</p> <p>③,④(현행과 같음)</p>